

제286회 임시회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권영희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권 영 희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권영희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‘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우리나라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을 통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즉,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고,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행위 역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

하지만 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에서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장애가 있으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
해당 내용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실시한 ‘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’에서도,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지적되어 개정 권고의 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.

이에 본 개정안은 건축정책위원회의 해촉 사유에 '심신장애'라는 용어를 '장기간의 심신쇠약'으로 수정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례의 일부 오탈자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치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